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4639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 1. 주 문

- 코로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시정 전반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소셜 뉴딜을 포함하는 성남형 뉴딜을 집행부에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포스트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2. 제안이유

-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당초 기간 안에 실효성 있는 성남형 뉴딜 정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철저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함.

## 3. 관련법규

- 나.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특별위원회 구성)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